

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



국토교통부

# 국 토 교 통 부

수신 수신자 찬조

(경유)

제목 「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」 유권해석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민간 건설현장의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, 건설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래과 같이 「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(이하 표준도급계약서)」에 대하여 유권해석하오니 회원사, 발주기관,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알려주시고 적극적으로 이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래 -

## 가. 「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」 유권해석

-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었고 다수의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, 금번 코로나19 대응상황을 「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」 제17조에 따른 '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'로 유권해석함.

## 나.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사항

## ○ 공사기간의 연장

-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과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수급인 (건설사업자)은 도급인(발주자)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도급인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. (표준도급 계약서 제17조제1항 및 제2항)

## ○ 계약금액의 조정

- 코로나19로 인하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,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율 등은 산출내역서상의율을 적용함(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제3항, 제23조제1항)

- 코로나19에 따라 자재 등 수급불균형이 발생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록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함.(표준도급계약서 제22조제1항)

#### ○ 변경계약서 등의 교부

- 코로나 19로 인하여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, 도급인은 변경계약서와 그 부속 서류 등을 수급인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함. 만일 도급인이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이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고, 기간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동일한 내용대로 공사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봄.(표준도급계약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)

#### ○ 지체상금 부과 제외

- 코로나19로 인하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, 동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음.(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제4항, 제30조제1항)

#### ○ 준공검사 기간 연장

-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코로나19 비상상황이 종속되는 기간과 비상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3일까지 준공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.(표준도급계약서 제27조)

### 다. 분쟁의 해결

- 표준도급계약서 유권해석 등에 대해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,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.(국토교통부 건설 산업과 044-201-3540)
- 본 유권해석은 표준도급계약서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계약서 내용의 첨삭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음. 끝.

## 국토교통부장관

수신자 대한건설협회장, 대한전무건설협회장,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,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

사무관내부 이진수 행정사무관 김목진 ★건설정책과 2020.2.29.  
장 주종완

별조자

시행 건설정책과-925 접수

우 30103 세종특별시지사 두울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/ <http://www.motit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3498 팩스번호 044-201-5546 / [lego2600@motit.go.kr](mailto:lego2600@motit.go.kr) / 대국민 관계

일자리기 설상이고 복지입니다.